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1-289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시장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30. 청구인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1. 11. 26.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1-289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3. 11.부터 2019. 11. 14.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2단계)’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2020. 7. 13. 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준공 완료한 공사 구간(○○로 ○○농협 앞 사거리 주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17. 침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관계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10. 28. 개최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30.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2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30. 청구인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피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기준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청구인에게 잘못 적용하여 부실별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별점 측정기준은 업체와 건설기술인에게 부실별점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건설기술인에게 각각 별점을 부과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감리)와 관련해서는 업체에게는 별점 부과 없이 청구인에게만 부당하게 별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19. 11. 14.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침수피해는 후임자가 근무하였던 2020. 7. 13. 발생했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부실별점 2점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퇴출되고, 회사 내 감원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청구인과 함께 부실별점을 부과받았던 시공사와 현장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부실별점을 취소받은 바 있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청구인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피청구인에게 보고했어야 함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 피해가 발생한 구간의 임시관로는 청구인이 2019. 6. 9. 현장 검측을 하였고, 2019. 6. 10. 임시관로가 설치되었다. 청구인은 임시관로 설치 이후 우기를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수립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의무를 해태하였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이라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 또는 경력을 인정받아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소속된 도급업체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자격 이상(토목분야 특급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피청구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4)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5호 별점의 측정기준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1.5항 ‘배수상태의 불량’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건설기술인이 아니라면 피청구인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3호는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별점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공사 총괄 책임자(공사감독자)로서 공사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업무를 이행하도록 피청구인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감리용역을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7) 이 사건은 배수기능 상실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이 빠르게 대응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8) 별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기술

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부실벌점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4. 관계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3. 11.부터 2019. 11. 14.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2단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 2) 2020. 7. 13. 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준공 완료한 공사 구간(○○로 ○○농협 앞 사거리 주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17. 침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관계 회의를 개최하였다.
- 3) 피청구인이 2020. 10. 28. 개최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30.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2점 부과처분을 하였다.
- 4) 청구인은 2021. 9.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5)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0. 11. 1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0. 11. 10.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행정심판 청구서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20. 11. 10.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다) 청구인은 2021. 9.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외 심판청구 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